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량 희(인권운동공간 활)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정제형(재단법인 동천)
조은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호준(법무법인 정솔)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 ▶ 사업 유형: 공익연구
- ▶ 사업 수행기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량희, 박한희, 서채완, 이주희, 정제형, 조은호, 황호준)
- ▶ 사업 기간: 2020. 12. ~ 2021. 7. (8개월)
- ▶ 사업 지원금: 3,000,000원
- ▶ 사업 결과물: 연구보고서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고 집합금지, 자가격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의무를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벌주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 및 그 근거 법제를 분석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법처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이후에 또다시 발생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통한 방역조치가 갖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법제의 개선, 수사 및 사법기관의 관행 개선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 례

I. 서론	35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7
1.1. 코로나19와 방역조치	357
1.2.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357
1.3. 연구의 목적	358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59
2.1. 연구의 방법	359
2.2. 연구의 범위	359
3. 연구의 기대효과	360
II.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의 근거 법제와 입법 동향 분석	360
1.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의 근거 법제	360
1.1. 감염병 대응에 관한 국내 법체계	360
1.2.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법처리에 관한 현행 법제의 분석	362
1.2.1.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상 형사처벌조항 및 과태료 부과조항	362
1.2.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사법처리 근거조항	366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법처리 근거 법제의 개정 경과와 문제점	370
2.1.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법처리 근거 법제의 개정 현황	370
2.2. 감염병예방법의 주요 개정 경과	370
2.3. 검역법의 주요 개정 경과	371
2.4. 사법처리 근거 법제 개정의 경향성과 그 문제점	371
3. 코로나19의 대응 관련 사법처리에 관한 입법부의 동향과 문제점	373
3.1. 코로나19 상황에서 입법부의 동향	373
3.2. 코로나19의 대응 관련 사법처리 법안의 발의 현황	374
3.3. 입법 동향의 문제점	377
III.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 및 문제점	377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377
1.1.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377
1.2.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379
1.2.1.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	379
1.2.2.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380

1.3. 행정 동향의 문제점	380
2. 수사 및 기소 현황 및 문제점	381
2.1. 수사 및 기소 현황	381
2.2.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386
2.3.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388
3.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389
3.1. 법원 판결 통계	389
3.1.1. 선고형 통계	390
3.1.2. 양형 통계	392
3.2. 주요 판례 분석	395
3.2.1. 동일한 사실관계로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기소되었으나 사법부가 자의적 법령 적용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경우	395
3.2.2. 이탈 시간, 거리 등 위반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음에도 평균 이상의 벌금형 혹은 실형을 선고함	395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1) : 가족의 임종, 위독한 가족의 병구완, 가족의 약을 전달하기 위한 경우 등	396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2) : 피고인 자신의 지병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자가격리 장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탈한 경우	397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범죄피해 신고, 확인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탈한 경우	397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행정청으로부터 구호물품(식료품, 생필품 등)을 적절하게 지원받지 못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397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생계와 직결된 사유 때문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98
3.2.4.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행정청의 지원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처벌함	399
3.2.5. 행정법상 기본원칙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실수 등으로 피고인이 오인, 착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나,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음	399
3.2.6.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음성 판정 통보받고 이탈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음에도 실형을 선고함	401
3.2.7.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양형에 대한 판단이 다름	401
3.2.8.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피고인의 소극적 부인까지 적극적 방해로 판단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음	401

3.3. 법원 판결의 문제점	402
IV.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본 사법처리 현황의 문제점	407
1.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국제인권규범	407
1.1.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제한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407
1.2. 코로나19 관련 비상조치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407
1.3. 코로나19 관련 형사적 제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408
1.4. 국제인권규범에서 도출되는 원칙	411
2. 해외의 사례	411
3.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본 사법처리 현황의 문제점	412
V. 결론 및 제언	413
1. 결론	413
1.1. 감염병예방법 등 사법처리 근거 법제 및 입법 동향의 문제	414
1.2. 수사 및 사법기관의 문제	414
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415
1.4. 소결	415
2. 제언	415
2.1. 국회에 대한 제언	415
2.2. 수사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제언	418
2.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언	418
참고문헌	419

표·그림 차례

〈표 1. 감염병예방법상 형사처벌 조항〉	362
〈표 2. 감염병예방법 상 과태료 부과조항〉	365
〈표 3. 검역법상 형사처벌조항〉	365
〈표 4. 검역법상 과태료 부과조항〉	366
〈표 5.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사법처리 근거조항〉	369
〈표 6. 감염병예방법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370
〈표 7. 검역법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371

〈표 8. 감염병예방법의 개정경과(타법개정 포함)〉	373
〈표 9. 21대 국회가 발의한 사법처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7. 28. 기준)〉	375
〈표 10. 21대 국회가 발의한 사법처리에 관한 개별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2021. 7. 28. 기준)〉	377
〈표 11. 집합금지, 격리조치, 역학조사의 요건〉	379
〈표 12.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21.4.30.기준)〉	381
〈표 13.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송치 / 불송치 비율〉	382
〈표 14. 시기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현황〉	382
〈표 15.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도청별 수사 현황('21.4.30.기준)〉	382
〈표 16. 감염병예방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	384
〈표 17. 감염병예방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	384
〈표 18. 비교: 법무부 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 결과〉	385
〈표 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불기소 비율〉	385
〈표 20. 비교: 전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385
〈그림 1.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형 통계〉	390
〈그림 2. 감염병예방법 위반 징역형 통계〉	391
〈그림 3. 감염병예방법 위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통계〉	391
〈그림 4. 감염병예방법 위반 양형사유 통계〉	392

코로나19와 범죄화: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이주희, 량희, 박한희, 서채완, 정제형, 조은호, 황호준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연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코로나19와 방역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하 ‘코로나19’)는 2019. 12. 30.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사례가 확인¹⁾된 이래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음. 한국에서도 2020. 1. 20.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2021. 8. 현재까지 약 19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음.
- 비말감염으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요구됨.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고 집회금지,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등을 실시함.
- 또한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가량의 자가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역조치 역시 실시됨
- 이러한 방역조치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과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집회금지,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사례도 나타남

1.2.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 2020. 2. 26.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의 입국금지 근거, 환자 강제 입원 규정,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근거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법개정이었음
-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²⁾은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1) WHO, 「Novel Coronavirus (2019-nCoV) SITUATION REPORT - 1」, 2020. 1. 20., 1쪽,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0760/nCoVsitrep21Jan2020-eng.pdf?sequence=3&isAllowed=y> (2021. 7. 27. 접속)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024634

-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이 3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 발맞춰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힘³⁾
- 이에 따라 2020. 5. 26.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⁴⁾, 이후로도 방역조치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 2.부터 2021. 7. 6.까지 약 1년 5개월간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은 6,976명이며 이 중 4,147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음.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었음⁵⁾
 -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확산 초기부터 방역조치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상의 벌칙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형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짐. 또한 정부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검경의 수사도 이루어짐
 - 그러나 형사처벌은 다른 제재에 비해 침해되는 권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형사처벌 일변도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큼. 이와 관련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국가의 비상적인 방역조치가 적법성, 비례성,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형사처벌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방역조치를 지키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여 왔음.
 -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의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1.3. 연구의 목적

- 이상과 같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에게 방역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고, 처벌의 정도 역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처벌 위주의 방역조치는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구조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과잉처벌을 함에 따라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음. 또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방역조치를 준수하지 못한 이들이 차별적인 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 나아가 형벌을 통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방역의무를 지키지 않은 개개인에게 지우

3) MBC,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등 엄중 처벌”」, 2020. 3. 9.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70055_32633.html (2021. 7. 27. 접속)

4) 연합뉴스,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종합)」, 2020. 5. 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047151060> (2021. 7. 27. 접속)

5) 지방자치단체뉴스,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http://www.jj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24> (2021. 7. 27. 접속)

는 것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게 만들어 방역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

- 무엇보다 형벌은 개인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엄벌주의 기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크다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 및 그 근거 법제를 분석하고, 국제인권규범에서 도출된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법처리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연구의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짐.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제 및 행정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선행연구⁶⁾들을 분석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의 현황 및 이에 근거한 사법처리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봄
- 또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방역조치위반 혐의로 이루어진 수사 및 기소 통계를 받아 분석하였고, 법원 판결서 열람제도를 통해 형사판결문을 제공받아 분석을 하였음. 그 밖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수사 및 처벌사례에 대해서도 분석함
- 국제인권규범상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인권최고대표,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 국제인권기구들 및 유럽평의회 등 지역기구에서 나온 코로나19와 사법처리와 관련된 주요 문서들을 분석함

2.2. 연구의 범위

-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근거 법제와 관련하여
 -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상의 형사처벌 조항 및 사법처리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각 법들의 개정 과정 및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았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정적 조치의 동향을 분석함

6)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이준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 백범석, 「COVID-19와 국제인권법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2020
- 이정민, 「코로나19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법학논총』 44(3), 2020
- 오동석,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생명」, 『윤리와 정책』, 5(1), 2021
- 주현경, 「코로나19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형사정책』 32(4), 2021
- 이원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33(1), 2021
- 하태인,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91), 2021

□ 사법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 2020. 2. ~ 2021. 4.까지 이루어진 경찰의 사법처리 현황을 적용된 혐의별(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로 분석하고,
- 2020. 1. ~ 2021. 4.까지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불기소 등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했으며,
- 2020. 2. ~ 2021. 6.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된 형사 확정판결을 전수조사하고 문제 되는 사례를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규범상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유엔에이즈 등 국제기구 및 유럽평의회, 미주인권재판소 등 지역인권기구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와 비상조치, 형사처벌 관련 권고안, 의결문,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공통되는 원칙을 도출해 냄

3. 연구의 기대효과

- 현재의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코로나19 확산 및 이후에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통한 방역조치가 갖는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방역 관련 법제의 개선, 수사 및 사법기관의 관행 개선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II.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의 근거 법제와 입법 동향 분석

1.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의 근거 법제

1.1. 감염병 대응에 관한 국내 법체계

□ 코로나19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 나목,7)에 따른 ‘사회재난’ 이자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8)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해당함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8) 감염병예방법 제2조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사회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은 감염병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의약품, 환자 등과 관련한 법률, 영유아·학생·근로자·수용자·군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함⁹⁾
 - 감염병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검역법」
 - 개별 감염병 대응 법률: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감염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의약품, 환자 등과 관련한 법률
 - 「의료법」
 - 「약사법」
 - 「환자안전법」
 -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영유아·학생·근로자·수용자·군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학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외국인보호규칙」¹⁰⁾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에 관한 법률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9) 이준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6-10쪽을 참고하여 일부 법령을 보완한 내용이다.

10) 법률이 아니지만,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시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 규칙으로, 일부 조항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관한 기본적인 국가의 대응체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감염병예방법이고,¹¹⁾
-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2015년과 2018년 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감염병의 분류 개편,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손실보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¹²⁾

1.2.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법처리에 관한 현행 법제의 분석

1.2.1.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상 형사처벌조항 및 과태료 부과조항

-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련의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¹³⁾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법처리는 대부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있음
- 한편 정부가 코로나19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검역 및 방역조치에 대한 일부 근거는 검역법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법처리는 검역법에 근거하고 있음
- 즉,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련의 행정작용을 위반한 경우 이루어지는 사법처리의 대표적인 근거 법률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이라 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은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형사처벌조항을, 제83에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고 있음
 - 감염병예방법은 대부분의 주요 관리적 조치, 역학조사, 방역조치 위반, 예방조치 위반, 강제처분 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가중처벌조항을 통해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감염병 전파행위를 하는 경우를 형의 가중요소로 두고 있음

〈표 1. 감염병예방법상 형사처벌 조항〉

조항	호	관련 조문	처벌 대상자	형량
제77조	1	제22조 제1항 제22조 제2항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3조의3 제1항	-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3	제40조의3 제1항	- 의료·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제78조	1	제23조 제2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3조의3 제3항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1)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제10판, 2021,에서 대부분의 코로나19에 관한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근거하고 있다.

12) 이준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46쪽

13) 이준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6쪽 참조

조항	호	관련 조문	처벌 대상자	형량
	3	제74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79조	1	제18조 제3항	-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자 -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한 자 -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2조 제3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	-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	-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3의3	제49조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4항	-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 아닌 자	
	5	제76조의2제6항	-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자	
제79조의2	1	제23조의4 제1항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3조의4 제2항	-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3	제76조의2 제1항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	
	4	제76조의2 제2항	-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제79조의3	1	제41조 제1항	-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1조 제2항	-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7항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제79조의4	1	제11조	- 제1급, 제2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제1급, 제2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조항	호	관련 조문	처벌 대상자	형량
제80조	1	제11조	- 제3급, 제4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제3급, 제4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2의2	제13조제2항	-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	
	3	제37조제4항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7항 제외)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5조	-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들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7	제47조(제3호 제외), 제49조(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제14호 제외)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	
	8	제52조제1항	-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제54조제1항	-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제81조	3	제12조제1항	- 신고를 게을리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6	제20조	-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	-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	-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2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9	제45조 제2항	-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제49조 제1항 제3호	-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74조의2 제1항	-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1조의2 제1항	제79조의1호	-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제81조의2 제2항	제79조의3	- 제79조의3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제82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 또는 개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	

〈표 2. 감염병예방법 상 과태료 부과조항〉

조항	호	관련 조문	처벌 대상자	과태료 액수
제83조 제1항	1	제23조 제3항, 제4항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23조 제5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2	-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제83조 제2항		제49조제1항 제2호의2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아니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3조 제3항	1	제28조 제2항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33조의3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41조 제3항	-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제51조 제3항	-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 제1항, 제2항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 제2항	-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제83조 제4항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아니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49조제1항제2호의4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한 자	

- 검역법은 제39조와 제40조에서 형사처벌조항을, 제41조에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고 있음
- 검역법은 감염병예방법과 동일하게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나, 감염병예방법과는 다르게 감염전파 여부에 따른 가중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표 3. 검역법상 형사처벌조항〉

조항	호	관련 조문	처벌 대상자	형량
제39조 제1항	1	제6조 제1항	-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12조 제3항	-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 제1항	-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조항	호	관련 조문	처벌 대상자	형량
제39조 제2항	1	제15조 제3항	-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제15조 제4항, 제23조 제4항	-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	-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 제1항	-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0조	제39조		-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 또는 개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

〈표 4. 검역법상 과태료 부과조항〉

조항	호	관련 조문	처벌 대상자	과태료 액수
제41조 제1항	1	제12조의2 제1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29조의4	-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41조 제2항	2	제9조	-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의2	제12조의2제3항	- 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	-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	-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6	제29조제1항	- 검역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등 29조 제1항상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2.2.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사법처리 근거조항

- 2021. 7. 6.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사례를 보면 약 98%가 집합금지 위반,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방해 혐의임¹⁴⁾
- 집합금지의 법적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이고,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같은 법 제80조 제7호임
 - 집합금지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릴 수 있는 조치이고,
 - 그 대상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집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합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됨
 -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4) 한국일보, 「코로나19방역관리법 위반 7000여명 사법처리」, 2021. 7. 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809500005147> (2017. 7. 18. 접속)

- 격리조치의 법적근거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의 복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법에 따른 격리 조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대상, 요건 등이 일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감염병예방법상의 격리조치의 근거는 제42조 제2항 제1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이고, 해당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같은 법 제79조의3 제4호와 제5호이며, 여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가 가중됨
- 감염병예방법상의 격리조치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1급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려질 수 있는 조치로,
 - 그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제15호가 각 규정하는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의미하는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가 규정하는 ‘감염병의심자’¹⁵⁾임
 -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병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파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가 가중될 수 있음
- 검역법상의 격리조치의 근거는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이며,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조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3호와 제4호임
- 검역법상의 격리조치는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¹⁶⁾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내릴 수 있는 조치로,
 - 그 대상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임
 -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의 대상자가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검역법

15)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검역법 제2조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등 호흡기 증후군(MERS)

아. 에볼라바이러스병

자.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제4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검역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는 사실상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인데, 이를 위반한 경우 검역법 제39조 제3호와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¹⁷⁾
- 검역법상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가 가중될 수 있음
- 한편 검역법 제39조 제3호는 검역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법 제39조 제4호가 처벌하는 검역법 제16조 제1항 및 검역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각 격리조치가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고 있어 처벌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¹⁸⁾

○ 역학조사의 법적근거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의 복수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 대상, 요건 등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음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근거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9조이고,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또는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8호임
-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내릴 수 있는 조치임
- 처벌의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②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③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제3호)의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과 감염병예방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사람임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29조는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방해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검역법상 역학조사의 근거는 같은 법 제29조이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같은 법 제41조 제6호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17) 이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2분의 1까지가 가중될 수 있을 것임

18) 검역법 제39조의 제3호의 “제15조 제1항”을 “제15조 제1항(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는 제외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타당할 것임

- 검역법상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릴 수 있는 조치로,
- 과태료 부과 대상은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에 따르지 않은 사람임

〈표 5.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사법처리 근거조항〉

구분	법적 근거	주체	요건	적용(처벌)대상	위반(방해)시 처벌조항	가중 처벌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하는 모든 사람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X	
격리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4호	O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질병관리청장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법 제39조 제3호	X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법 제39조 제3호		
	검역법 제16조 제1항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법 제39조 제4호		X
	검역법 제17조 제1항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법 제39조 제4호		O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 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누구든지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O	
	감염병예방법 제29조 (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8호	X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법처리 근거 법제의 개정 경과와 문제점

2.1.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법처리 근거 법제의 개정 현황

- 이상에서 살펴본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작용 대부분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상의 사법처리 법제의 체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구축되었는데,
 -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현재(2021. 7.)까지 총 5차례(타법개정 미포함) 개정이 되었고,
 - 검역법은 총 1차례(타법개정 미포함) 개정이 되었음

2.2. 감염병예방법의 주요 개정 경과

- 감염병예방법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한 해에 1차례 정도 개정(타법개정 미포함)이 되었다가, 그 이후인 2020. 3. 4.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5차례(2020년: 4차례, 2021년: 1차례, 타법개정 미포함)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감염병예방법은 2020. 3. 4., 2020. 8. 12., 2020. 9. 29., 2020. 12. 15., 2021. 3. 9.에 각 일부 개정되었고, 사법처리와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6. 감염병예방법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2020. 3. 4.	-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실을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에게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 제2항 및 제80조 제2호의2 신설) -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제42조 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3 신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건 의료기관에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의료인, 약사 등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 등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제76조의2)
2020. 8. 12.	-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제49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83조 제2항·제4항 신설)
2020. 9. 29.	-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 시

개정일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p>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제34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근거를 마련함(제42조 제2항) - 감염병환자 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를 포함함(제76조의2 및 제79조의2)
2020. 12. 15.	- 사법처리와 관련된 규정 개정 없음-
2021.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2조 및 제81조). -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폐쇄 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49조) -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제72조의2 신설). -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또는 입원·치료·격리 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 전파 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제81조의2 신설)

2.3. 검역법의 주요 개정 경과

- 검역법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약 2년 정도 개정이 된 바가 없다가, 2020. 3. 4. 감염병예방법과 함께 개정이 되었음. 그 중 사법처리와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7. 검역법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개정일	사법처리 관련 주요 개정사항
2020.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감염병 접촉자' 개념의 정의(제2조 제5호) - 격리의 대상을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으로 확대(검역법 제15조의2 제1호, 제2호, 제17조)

2.4. 사법처리 근거 법제 개정의 경향성과 그 문제점

-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 3. 4.부터 개정되기 시작하였음
-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권한행사의 주체가 확대되거나 제재 대상, 제재 대상 행위, 제재 수준 등이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성이 확인됨
- 행정 권한 행사의 주체 확대
-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2020. 3. 4.,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대부분의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 조치의 권한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이들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으로 폭넓게 규정된 상황임

- 이처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 조치의 가능성 높임으로써 사법처리의 위협성을 증대시키는 것임

○ 제재 대상의 확대

-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2020. 3. 4. '감염병의심자'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는데,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부분의 강제처분, 방역조치, 예방조치의 대상이 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상 제재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검역법의 경우에도 2020. 3. 4. 접촉의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는데, 격리 등 조치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검역법상 제재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제재 대상 행위의 확대

- 검역법의 경우 특별한 개정이 없었지만,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내릴 수 있는 조치의 수가 확대되고 있음
- 2020. 3. 4. 개정에서는 강제처분에 자가격리 위반과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포함시켰고, 이에 대응하는 벌칙규정인 제79조의3이 신설되었음
- 2020. 8. 12. 개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2020. 9. 29. 개정에서는 이동수단의 제한, 위치정보 수집, 감염 여부 검사 등이 강제처분에 포함되었음

○ 형벌 수준의 강화

- 2020. 3. 4. 개정에서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격리조치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음(제79조의3 신설)
- 2021. 3. 9. 개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또는 입원·치료·격리 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 전파 시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을 도입하였음

□ 위 개정 경과에 따른 행정권한 행사의 주체 확대, 제재 대상, 제재 대상 행위, 형벌 수준의 강화 및 확대의 경향성은

○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대응하는 법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와 형벌의 수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위와 같은 제재 및 형벌의 강화에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 상황을 전제로 제재 및 형벌의 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강화된 벌칙 규정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경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전반에 있어 과잉형벌화의 우려가 있음
- 중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감염인에 대한 과잉형벌과 낙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형벌의 강화는 결국 개인에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음

3. 코로나19의 대응 관련 사법처리에 관한 입법부의 동향과 문제점

3.1. 코로나19 상황에서 입법부의 동향

- 국회는 2020년부터 163건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20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6년부터 2020년 전까지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5건 정도만 발의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1년 6개월 만에 약 4배정도 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 것임
 - 20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15건 발의 되었고,
 - 21대 국회에서는 2020. 6. 1.부터 현재(2021. 7. 28.)까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147여건이 발의한 상황이며,
 -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법 또는 결의안도 18건이 발의된 상황임
- 한편 코로나19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개별 법률들도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약 1,000여 건의 개별 법률이 제안이유에 코로나19를 명시하며 발의되었음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지 약 1년 6개월 동안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은 타법개정 포함 총 9회 개정되었는데, 이전까지 감염병예방법이 1~2년에 한 차례 정도 개정되어왔다는 점을 돌아볼 때,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국회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다고 보임

〈표 8. 감염병예방법의 개정경과(타법개정 포함)〉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 개정 구분
2020. 3. 4.	제17067호	2020. 9. 5.	일부개정
2020. 8. 11.	제17472호	2020. 9. 12.	타법개정
2020. 8. 12.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2020. 9. 29.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2020. 12. 15.	제17642호	2021. 6. 16.	일부개정

공포일자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 개정 구분
2020. 12. 22.	제17653호	2021. 1. 1.	타법개정
2020. 12. 22.	제17689호	2021. 1. 1.	타법개정
2021. 1. 12.	제17893호	2022. 1. 13.	타법개정
2021. 3. 9.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3.2. 코로나19의 대응 관련 사법처리 법안의 발의 현황

- 앞서 살펴본 개정경과를 살펴보았을 때,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은 주로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논란이 되었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제제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제재 및 처벌 수준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그중 일부는 수정되어 개정에 반영이 되었으며, 발의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제 대상 행위 확대
 - 거짓 정보 유포 형사처벌
 - 전파매개행위 형사처벌
 - 역학조사 정보제공 거부·방해·회피행위 형사처벌
 - 정보제공 거부행위 형사처벌
 - 진단검사 불응행위 형사처벌
 - 침을 뱉거나 고의적 감염전파 행위 과태료 부과
 - 가중처벌의 도입
 -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른 경우
 - 구상권의 청구
 - 고의 증과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 3배까지의 손해배상
 - 처벌수준 상향
 - 집회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으로 상향
 - 집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으로 상향
 -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으로 상향

〈표 9. 21대 국회가 발의한 사법처리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7. 28. 기준)〉

의안번호	의안명(발의 의원)	제안일자	주요내용
21015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2020.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외에 시·도지사도 확대 추가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안 제79조의2제3호).
21030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2020.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 -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 처벌(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21030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6인)	2020.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의 가중처벌(안 제70조의5 및 제82조의2 신설)
210313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11인)	2020.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77조제4호 및 제80조제7호).
21031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2020. 8.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 및 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신설(안 제35조의3조, 안 제78조 제2의2) - 출입자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구상권 청구
21033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2020.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안 제77조제4호 신설 및 제81조제10호).
210388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2020.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

의안번호	의안명(발의 의원)	제안일자	주요내용
	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안 제79조의3제6호 신설 등).
21039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5인)	2020. 9. 15.	-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안 제72조의2, 제79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항 신설).
2104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2020. 9. 24.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안 제35조의3 및 제79조).
2104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2020. 9. 25.	-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안 제76조의2 제1항 및 안 제83조제1항제5호 신설).
21057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2020. 11. 25.	-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35조의2 등).
21087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4인)	2021. 3. 11.	- 법인·단체·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 21대 국회에서는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의 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 법률을 통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 대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거부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표 10. 21대 국회가 발의한 사법처리에 관한 개별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2021. 7. 28. 기준)〉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 의원)	제안일자	주요내용
2103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20. 8. 20.	-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 또는 퇴거(제42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제74조의3)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안 제78조의3).
21041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	2020. 9. 23.	- 테러의 정익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3.3. 입법 동향의 문제점

- 코로나19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그 결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과잉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 특히 전파매개행위, 거짓 정보의 유포를 형사처벌 하거나,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것을 테러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후술하듯이 국제인권기준 등에도 부합하지 않음
- 앞서 개정경과에서 지적하였듯이, 위와 같은 법률안들이 비판적 검토 없이 추진되어 법제화되는 경우 감염인에 대한 낙인화, 차별,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으며, 결국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감염병 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을 야기함
- 실제 위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 가중처벌조항의 도입, 정보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 등은 수정되어 현행 법제에 반영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제제 및 처벌을 확대, 강화하려는 국회의 법안의 발의가 지속된다면 현행 법제상의 제재 및 처벌 수준이 더욱 확대,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처벌조항의 완화 또는 예외를 규정하는 등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II.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1.1.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향

- 대한민국에서는 2019. 1. 20.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그 후속조치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¹⁹⁾ 2020. 1. 27. 4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

하자 ‘신종플루’ 이후 10년 만에 위기 경보를 ‘경계’로,²⁰⁾ 2020. 2. 30. 대구 지역에서 첫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가 8,000여명에 이르자 ‘심각’ 단계로²¹⁾ 격상하였음²²⁾

-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시·도, 시·군·구에 지역방역대책반이, 발생지역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과 시·도의 업무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차관) 산하에 중앙-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²³⁾
- 정부는 ① 검사·확진 → ② 역학·추적 → ③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학조사 및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해당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명하고 있음²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기본 대응체계와 더불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 예방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여, 각 단계별로 집합,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심밴드, 안전보호앱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자가격리 이탈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 그 외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집합금지, 집단검사 명령, 집회금지 명령, 자가격리 명령 등 다양한 강제처분·예방·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적작용의 구체적 내용, 절차 등을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10판까지 발간되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기초하여 역학조사,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를 집행하고 있고,
 -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고시, 공고, 행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를 수립·집행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와 같이 지침에 기초하거나 고시, 공고,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행사하는 역학조사,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 제1항

19) 보건복지부,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 대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 20. 1쪽

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격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 27. 1쪽

21)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2. 23. 1-2쪽

22)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코로나19 1년 발생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년 발생보고서(2021.1.19. 기준)」, 『주간건강과질병』 제14권 제9호, 2021; 교육부,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백서, 2021; 서울특별시, 『서울시 코로나19 백서』, 서울특별시 백서, 20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코로나19 대응백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백서, 2021 참조

23)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제10판, 2021, 4쪽

24) 관계부처 합동, 「K- 3T 방역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2020. 6. 11. 2쪽

상의 조치로 평가되어 관련 처벌규정과 연계되고 있음

- 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지침, 고시, 공고, 행정명령상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 결국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되는 것임

1.2.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1.2.1. 광범위한 재량권의 행사

- 감염병예방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추상적인 요건만을 충족하면 역학조사, 강제처분·예방·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

〈표 11. 집합금지, 격리조치, 역학조사의 요건〉

조치	법적 근거	주체	요건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질병관리청장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검역법 제16조 제1항		
검역법 제17조 제1항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29조(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 이상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역학조사, 강제처분·예방·방역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차별의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실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진단검사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차별을 초래하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²⁵⁾
-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형태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집회의 인원수를 자의적으로 축소시키는 고시와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약²⁶⁾

25) 연합뉴스TV,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 3. 17.,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317016300038> (2021. 7. 28. 접속)

- 특정 인원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부당히 이루어지는 격리조치로 발생하는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광범위한 제약 등²⁷⁾

1.2.2.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른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사법처리를 강조하고 있음
 -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020. 3. 26.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음
 -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구상권 청구 등의 원칙이 수립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는 2020. 8. 21.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뒤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음
 - 정부는 2021. 4. 2. 적극적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 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²⁸⁾
- 위와 같은 무관용 원칙의 적용은 결국 사소한 방역수칙 위반 등의 행위까지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하거나 부수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사법처리를 무분별하게 확대시키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가혹한 처우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1.3. 행정 동향의 문제점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상적 요건만을 충족하면 역학조사, 강제처분·예방·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차별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무관용 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제재가 불필요한 시민들까지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존재함
-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의 대응 관련 사법처리 근거 법제는 과잉형벌과 낙인화를 초래하고, 개인에게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성이 있는데, 이러한 근거 법제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민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

26)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방역 ‘집회금지’ 조치 잇단 논란」, 2020. 7. 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30> (2021. 7. 28. 접속)

27) 연합뉴스, 「“돈 없어서...” 창문 없는 고시원서 지내는 자가격리자」, 2020. 6.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46000065> (2021. 7. 28. 접속)

2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 -」, 2021. 4. 2. 6-7쪽

-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점점 더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고, 무관용 원칙을 감염병 대응의 기본원칙으로 수립하고 있음

2. 수사 및 기소 현황 및 문제점

2.1. 수사 및 기소 현황

- 경찰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2020년 2월~2021년 4월)

○ 사법처리 규모

- 전체 사법처리 인원 중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이 차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집합금지의 경우 사건 1건에 여러 명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

〈표 12.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21.4.30.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
합 계		5,734	1,463	3,877	251	143
종결	송치	3,605 (구속 17)	1,180 (구속 9)	2,230	137 (구속 6)	58 (구속 2)
	불송치 등	704	98	439	87	80
수사 중		1,425	185	1,208	27	5

자료 출처: 이탄희 의원/경찰청

○ 구속 규모

- 구속 인원은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서 가장 많지만, 송치 인원 중 구속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았을 때 역학조사 방해가 가장 높음
(역학조사 방해 4.4% / 기타 위반 3.5% / 격리조치 위반 0.8%)
- 징역형이 없고 상대적으로 벌금이 낮은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된 인원수는 많지만 구속 사례가 없고, 처벌이 가장 무거운 역학조사 방해행위가 구속 비율이 높은 것을 보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의 경중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송치/불송치 규모

-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로 송치된 비율은 83.7%
- 유형별로 구분하면 역학조사 방해와 기타 위반사항은 상대적으로 송치율이 낮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이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의 고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불송치 비율이 높다면 무리한 고발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표 13.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송치 / 불송치 비율〉

구 분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
수사 종결	4,309	1,278	2,669	224	138
송치율	83.7%	92.3%	83.6%	61.2%	42%
불송치율	16.3%	7.7%	16.5%	38.9%	58%

○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경향

- 수사 현황을 2~3개월 간격으로 비교했을 때, 2021년 1월~4월 수사 대상자가 가장 많이 증가.
- 각 위반 유형과 비교했을 때 집합금지 위반 수사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21년 1월~4월에 가장 많이 늘었음(1,891명 증가)
-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2020년 7월~9월에 크게 증가(176명 증가)

〈표 14. 시기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현황〉

구 분	합 계	증가인원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
2020년 6월	830명 구속 6명		415명 구속 6명	376명	25명	14명
2020년 9월	2,314명 구속 12명	1,484명	771명 구속 7명	1,272명	201명 구속 4명	70명 구속 1명
2020년 12월	3,366명 구속 15명	1,052명	1,050명 구속 9명	1,986명	211명 구속 4명	119명 구속 2명
2021년 4월	5,734명 구속 7명	2,368명	1,463명 구속 9명	3,877명	251명 구속 6명	143명 구속 2명
2021년 7월	6,976명 구속 17명	1,242명	1,718명 구속 9명	4,836명	278명 구속 6명	144명 구속 2명

○ 지역별 수사 현황

- 지역별로 수사 현황을 구분했을 때 수도권이 3,868명으로 전체 중 67.5%를 차지. 이는 수도권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한 영향으로 보이고 수도권 확진 환자 비율과 유사함

〈표 15.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도청별 수사 현황(*21.4.30.기준)〉

(단위: 명)

시도청 \ 유형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
합 계	5,734 (구속 17)	1,463 (구속 9)	3,877	251 (구속 6)	143 (구속 2)
서울	1,740 (구속 3)	329 (구속 3)	1,354	34	23
부산	374 (구속 2)	163 (구속 2)	173	37	1

시도청	유형	합 계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기타 위반사항
대구		146 (구속 2)	72	54	15 (구속 2)	5
인천		568 (구속 2)	118 (구속 1)	433	12 (구속 1)	5
광주		407 (구속 1)	36	357	13	1 (구속 1)
대전		65	9	38	18	-
울산		98	38	39	21	-
세종		24	13	11	-	-
경기남부		1,237 (구속 1)	214	978	27 (구속 1)	18
경기북부		323 (구속 2)	99 (구속 2)	195	8	21
강원		41	29	11	1	-
충북		111	25	73	6	7
충남		179	128	37	9	5
전북		72	12	25	13	22
전남		71	37	13	6	15
경북		95 (구속 4)	37 (구속 1)	30	11 (구속 2)	17 (구속 1)
경남		119	63	36	17	3
제주		64	41	20	3	-

자료 출처: 이탄희 의원/경찰청

〈표 16. 감염병예방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사건 접수	처분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합계	7,724	6,896	13	1,185	1,546	2,862	1,290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1,673	1,331	0	30	208	720	373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440	428	1	11	122	143	151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285	255	0	112	68	67	8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288	268	0	29	111	89	39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165	148	1	6	65	46	30
의정부지방법검찰청	434	421	2	44	86	199	90
인천지방법검찰청	861	766	2	196	112	361	95
춘천지방법검찰청	103	96	0	36	17	33	10
수원지방법검찰청	1,283	1,137	0	181	312	474	170
대전지방법검찰청	334	325	0	142	54	79	50
청주지방법검찰청	145	125	0	14	43	52	16
대구지방법검찰청	356	348	5	66	120	106	51
부산지방법검찰청	434	421	1	92	111	117	100
울산지방법검찰청	107	85	0	28	25	11	21
창원지방법검찰청	141	127	0	52	33	24	18
광주지방법검찰청	494	448	1	130	11	261	45
전주지방법검찰청	102	105	0	3	21	65	16
제주지방법검찰청	79	62	0	13	27	15	7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보완수사요구

자료 출처: 이탄희 의원/법무부

□ 검찰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 (2020년 1월~2021년 4월)

○ 구공판/구약식 규모

-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 중 구공판 비율이 43.7%를 차지
- 통상 형사사건의 구공판 비율(표18)보다 높음. 즉,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약식기소²⁹⁾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17. 감염병예방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

총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비율	구약식	구약식 비율	소계
5,606	2,744	13	1,185	43.7%	1,546	56.3%	2,862

29)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임

〈표 18. 비교: 법무부 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 결과〉

(단위: 명)

년도	총계	기소						불기소
		소계	구공판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비율	구약식	구약식 비율	소계
2019	1,047,416	618,128	23,383	159,169	29.5%	435,576	70.5%	371,333
2018	1,039,105	630,541	23,432	144,331	26.6%	462,778	73.4%	357,696
2017	1,155,336	718,704	26,736	146,811	24.1%	545,157	75.9%	385,711

자료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³⁰⁾

○ 기소/불기소 규모

-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39.8%
-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도 통상 형사사건 기소율(표20)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구공판 비율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형사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불기소 비율〉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6,896	2,744	39.8%	2,862	41.5%

〈표 20. 비교: 전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명)

년도	처분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2020	2,215,557	662,077	29.9%	1,291,658	58.3%
2019	2,361,611	699,111	29.6%	1,381,922	58.5%
2018	2,290,052	719,980	31.4%	1,320,937	57.7%
2017	2,407,061	809,882	33.7%	1,367,742	56.8%
2016	2,581,748	894,616	34.7%	1,458,816	56.5%

* 처분계 = 기소 + 불기소 + 이송

* 기소 = 구공판 + 구약식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 기소율(%) = (기소/처분계) X 100

* 불기소율 = (불기소건수/처분계) X 100

자료 출처: 대검찰청³¹⁾30) KOSIS, 「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결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82&conn_path=I2 (2021. 7. 27. 접속)31)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2021.7.26. 접속)

2.2.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 경찰

- 경찰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이후,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에 코로나19 신속대응팀 5,753명을 편성(2020.2.28.)
 -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형사·사이버수사·여청수사·정보 등 유관부서 합동으로 편성
 - 검사 대상자 소재 확인, 보건당국 역학조사 등 지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사법처리 등 업무를 담당
 - 보건당국 및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염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의 소재 확인을 최우선 업무로 방침을 세움
- 경찰청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 소재확인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팀 인원을 8,559명으로 확대함(2020.3.3.)
 - 신속대응팀은 소재 확인 요청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검사 대상자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고,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
- 경찰은 “법원 판단과 별개로, 앞으로 6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힘(2020.4.13)³²⁾
 -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 6가지
 - ▲감염 위험성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 이탈 여부 ▲자가 복귀 명령 불응 여부 ▲공무원의 행정 행위 방해 여부
 - 감염병예방법 벌칙 조항 개정 이후 자가격리 위반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동원
 - 경찰청장, “수차례 이탈, 주거 허위 기재, 법령에 따른 명령에 고의적 불응하는 등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의 현장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와 함께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경찰청,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 방역조치 위반 불법 다단계업체·유흥업소 등은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통보 조치(2020. 6. 9.)
- 경찰청,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히고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힘(2020.8.20)³³⁾

32) KBS뉴스, 「'자가격리 위반'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2020. 4. 1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27519>, (2021. 7. 26. 접속)

33) 서울경제, 「경찰청, “격리조치 위반시 완치 후 구속수사”...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2020. 8. 2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I2J3QO>, (2021. 7. 26. 접속)

□ 검찰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역학 조사를 회피하고 진찰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2020.2.25)
 -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에 ▲역학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감염 확인을 위한 진찰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 빙자 사기 및 매점 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 위반행위 ▲허위사실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응할 것을 지시
- 대검찰청,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공판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힘(2020.4.7)³⁴⁾
 - 검찰, 자가격리를 포함한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징역형 구형 방침.
 - 의도적으로 격리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 대검찰청, 방역당국의 조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악의적으로 방해한 중대 방역저해 사범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2020.8.25.)³⁵⁾
 - 대검찰청은 조직적·계획적 또는 악의적인 역학조사거부 행위, 방역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이 수반된 방역방해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
 -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

□ 정부

-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수도권 방역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차관, 경찰청장, 질병관리본부장 등 참석) 개최. 고의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 정책을 방해하면 구속 수사, 감염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결정함(2020.6.9.)³⁶⁾
 - 법무부, 관련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형 상한선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형량이 처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
 - 보건복지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준수 조치의 명시적 근거와 위반 시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 신설을 추진

34) 법률신문, 「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구형」, 2020. 4. 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761>, (2021. 7. 26. 접속)

35) 뉴스1,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400명 넘어…檢 “무관용 엄정대응”」, 2020. 9. 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1/102740090/1>, (2021. 7. 26. 접속)

36)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방역정책 방해하면 구속수사」, 2020. 6. 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260> (2021. 7. 26. 접속)

- 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는 악의적인 방역 방해행위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 하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대국민 담화 발표(2020.8.21.)

2.3.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대응

-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수사기관은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무관용 원칙 수사, 엄정사법처리 방침을 밝힘
 - 구속수사 원칙, 징역형, 법정 최고형 등을 언급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됨을 강조
 - 실제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기조가 반영되어 구공판 비율, 기소율이 높게 나타남
 - 통상 법률위반 행위가 경미할 경우 정식재판을 구하지 않는 약식명령(구약식)으로 처분함. 높은 형사재판 청구(구공판) 비율로 재판을 받기 위한 시간을 내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도 가중되는 피의자가 증가함
- 정부의 구속수사 원칙 선포
 -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³⁷⁾으로 함. 구속 사유³⁸⁾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인신구속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구속수사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부추김

□ 엄정대응의 결과는 과잉범죄화

- 중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모두 사법처리
 - 일부 부주의한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방역조치를 따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모든 행위가 범죄가 되어야 할지 엄밀한 논의가 필요
 - 모든 위반행위를 형벌로 다스릴 때 과잉범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형벌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게 되면 각각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위반의 수준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음. 결국 범죄와 범죄자를 양산하게 됨
- 강력처벌만 방역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

37)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8)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방법의 처벌규정을 강화,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상향
- 법개정 역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을 염두에 둔 수사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됨
- 법률과 정부의 메시지, 수사기관의 태도가 총체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하게 함.

□ 엄벌주의 기조는 감시와 불안의 공동체를 형성

- 감염병의 불확실성은 서로 의심하게 하고 감염된 환자를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또는 사회적 노력을 방해하는 사람처럼 인식하게 만들기 쉬움.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벌주의 태도는 감염병 환자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시민은 협력의 대상이자 방역의 주체임. 방역정책을 소통하고 설득하기 위한 존중이 아니라 처벌의 공포로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면 수용력이 낮아질 때마다 공권력과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경향성을 갖게 됨. 공권력에 의존하는 사회는 구성원들의 협력이나 존중보다는 감시와 불신의 공동체를 만들게 됨
- 실제 시민들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스스로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78.1%)하며, 우리 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65.2%),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24.4%) 순으로 확인됨³⁹⁾

3. 법원 판결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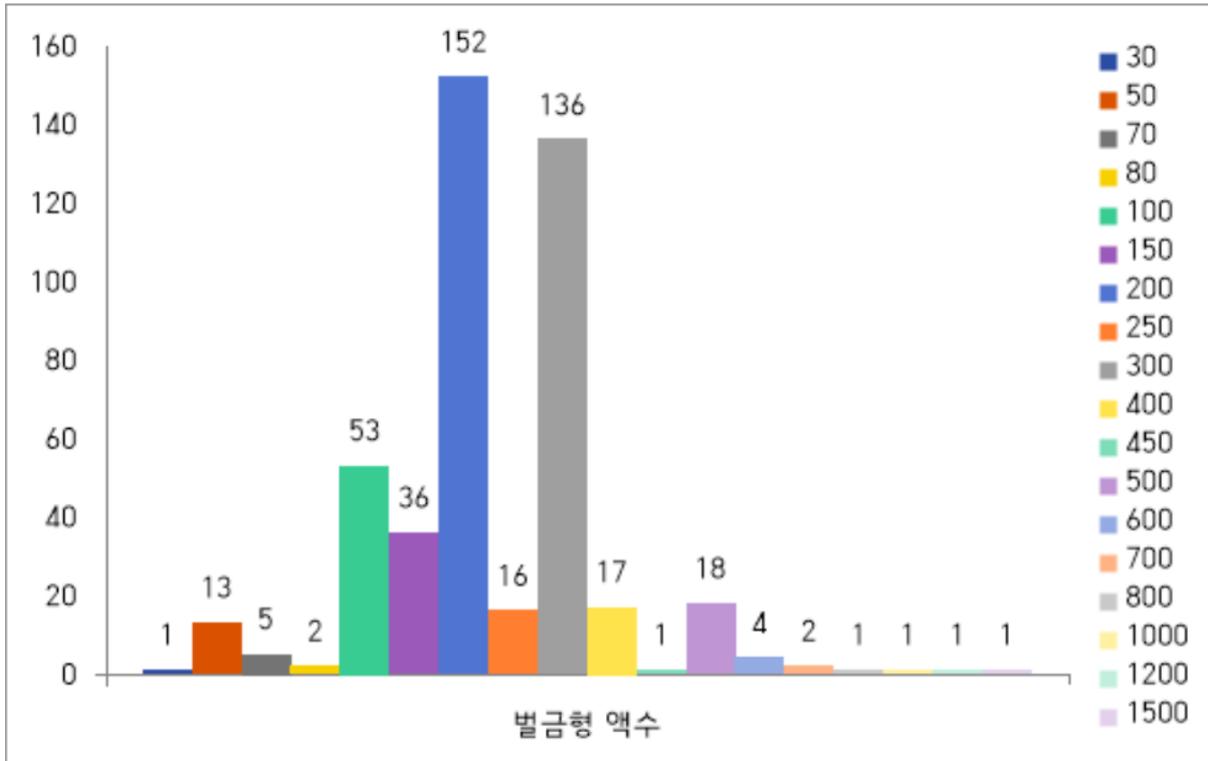
3.1. 법원 판결 통계

- 2020. 2. ~ 2021. 6.까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통해 감염병예방방법 위반으로 처벌된 형사 확정판결 566건을 전수조사하여, 판결문에 드러난 위반 경위를 살피고, 선고형의 종류와 정도, 양형요소의 종류와 내용을 통계 분석함
- 전체 피고인 수는 591명(징역형·벌금형 병과된 경우 1명, 무죄 1명 포함. 징역형·벌금형 병과된 1건은 징역형으로 표기)이며, 벌금형, 징역형 통계는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함

39) 질병관리청, 「대부분의 국민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 5. 5.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5562&contSeq=365562&board_id=140&gubun=BDJ (2021. 7. 26. 접속)

3.1.1. 선고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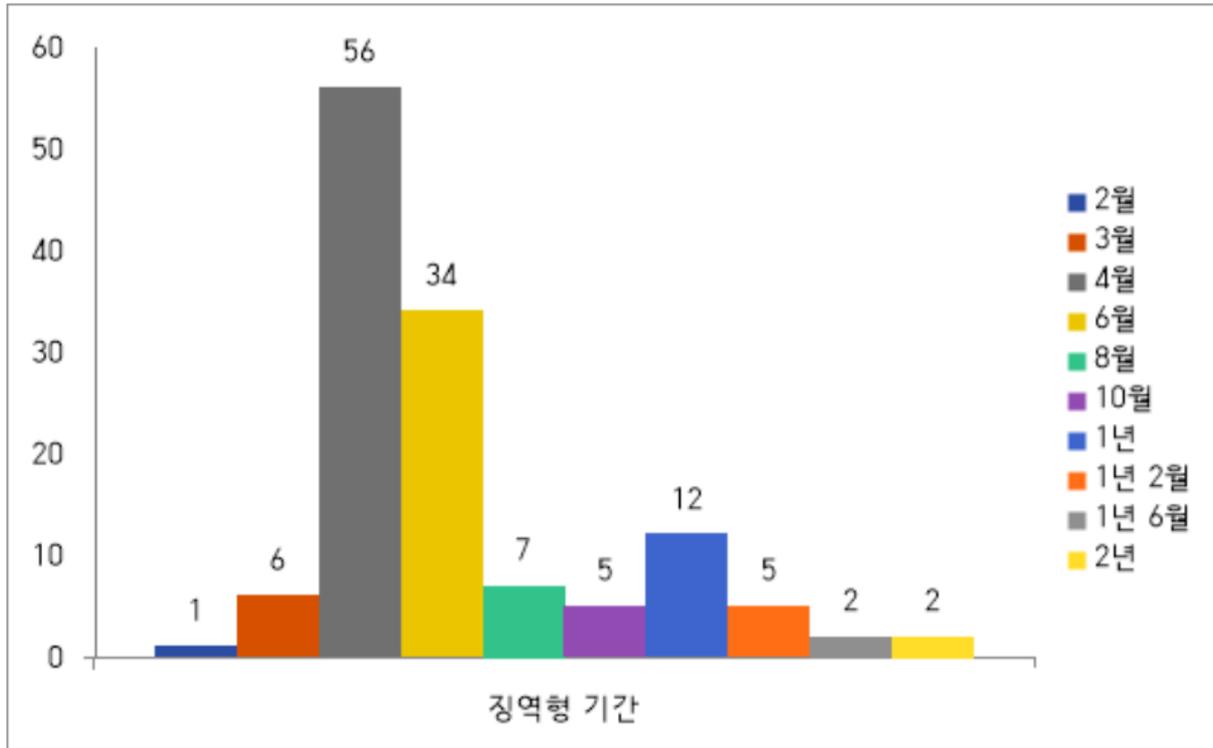
〈그림 1. 감염병예방방법 위반 벌금형 통계〉



□ 벌금형의 중간값은 200만 원, 벌금형 최고 액수는 1,500만 원, 최저 액수는 30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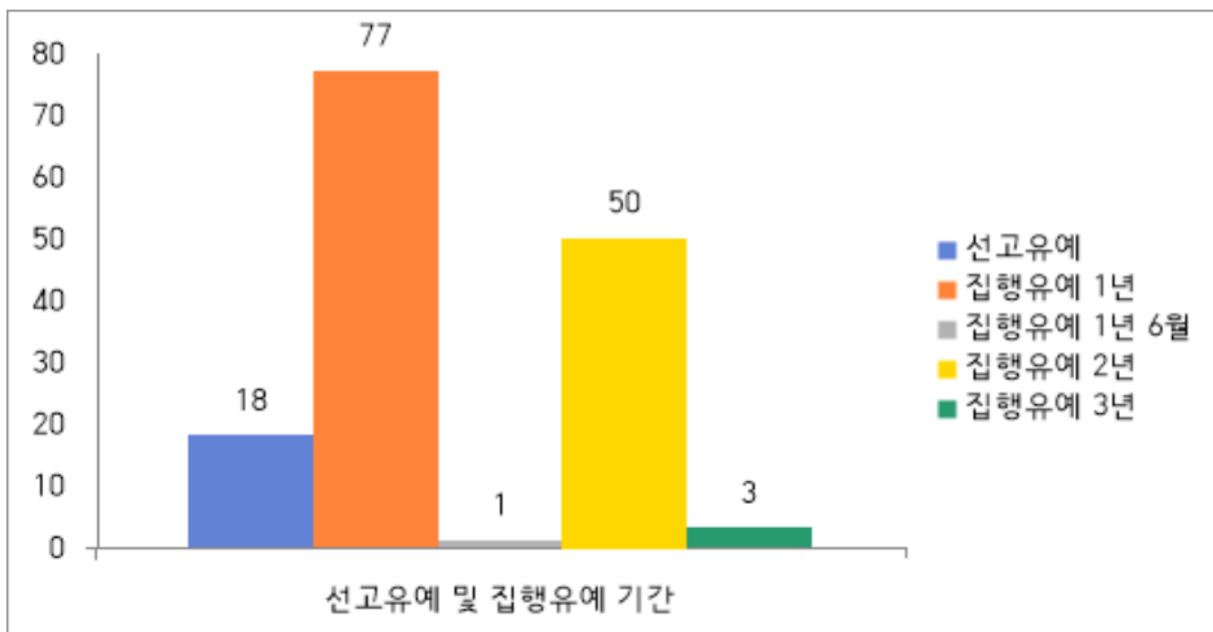
□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벌금 30만 원(1명), 벌금 50만 원(13명), 벌금 70만 원(5명), 벌금 80만 원(2명), 벌금 100만원(53명), 벌금 150만 원(36명), 벌금 200만 원(152명), 벌금 250만 원(16명), 벌금 300만 원(136명), 벌금 400만 원(17명), 벌금 450만 원(1명), 벌금 500만 원(18명), 벌금 600만 원(4명), 벌금 700만 원(2명), 벌금 800만 원(1명), 벌금 1,000만 원(1명), 벌금 1,200만 원(1명), 벌금 1,500만 원(1명)으로 벌금 선고는 전체 566건 중 439건임.

〈그림 2. 감염병예방방법 위반 징역형 통계〉



- 징역형의 최고는 2년, 최저는 2월임. 징역형 평균은 6.5월임
-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징역 2월(1명), 징역 3월(6명), 징역 4월(56명), 징역 6월(34명), 징역 8월(7명), 징역 10월(5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 2월(5명), 징역 1년 6월(2명), 징역 2년(2명)으로 징역형 선고는 전체 566건 중 126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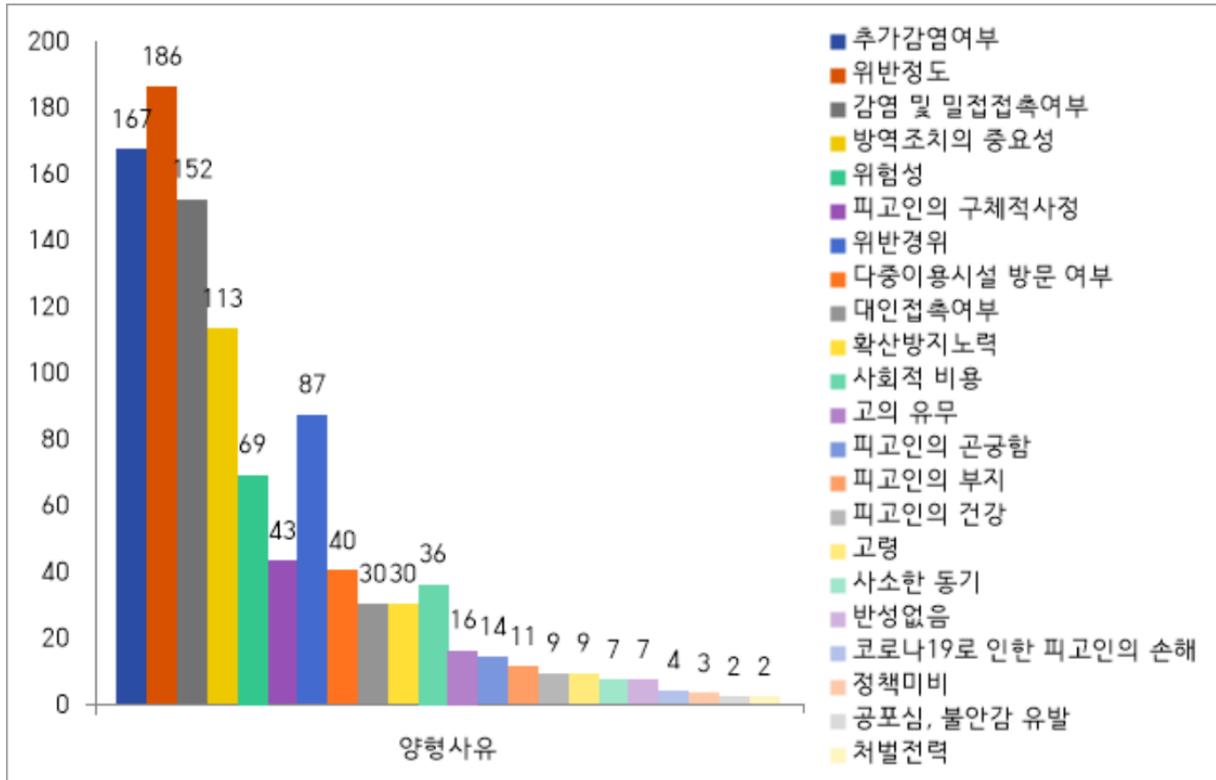
〈그림 3. 감염병예방방법 위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통계〉



- 선고유예는 14건에 불과함
- 집행유예 1년(77명), 집행유예 1년 6월(1명), 집행유예 2년(50명), 집행유예 3년(3명)임
- 벌금형에 집행유예 부가한 경우는 29건, 선고유예 부가한 경우는 12건임

3.1.2. 양형 통계

〈그림 4. 감염병예방법 위반 양형사유 통계〉



- 조사 대상 판결에서 고려한 양형요소는 총 22개임
 -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성 높은 양형 요소를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음
- 유형화된 양형요소는 ① 추가감염 여부, ② 위반정도, ③ 감염 및 밀접접촉 여부, ④ 방역조치의 중요성, ⑤ 위험성, ⑥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 ⑦ 위반경위, ⑧ 다중이용시설 방문 여부, ⑨ 대인접촉 여부, ⑩ 확산방지노력, ⑪ 사회적 비용, ⑫ 고의 유무, ⑬ 피고인의 곤궁함, ⑭ 피고인의 부지, ⑮ 피고인의 건강, ⑯ 고령, ⑰ 사소한 동기, ⑱ 반성없음, ⑲ 코로나19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 ⑳ 정책미비, ㉑ 공포심, 불안감 유발, ㉒ 처벌전력 등
-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일반적 중요성을 판단의 전제로서 가중사유로 명시한 경우가 대부분임(113건)
 - 많은 판례가 현 상황을 ‘미증유의 사태’, ‘전 세계적 유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적 노력 투입’ 등으로 묘사하며,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방역조치 위반을 ‘전 국가적 노

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평가함. 방역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당연시 하는 법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조치 위반 등으로 '사회적 비용' 이 증가한 점도 가중 요소로 고려
- 고의, 반성 여부, 처벌전력 등은 형사판결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요소임. 감염병예방법위반의 경우에도 고의, 반성 여부, 처벌전력 등의 요소를 가장 빈번하게 고려하였음.
 - 이 중 반성 여부는 통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설사와 함께 감경사유로 고려되었으므로, 통계에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사하며 가중사유로 명시한 예외적인 경우(7건)만을 별도로 표시함
 - '처벌전력'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의 특성상 대부분이 초범인 까닭에 상당수 판례가 감경사유로 설사함. 예외적으로 2건의 판결이 피고인의 동종전과, 이종전과를 가중사유로 삼음
- 상당수 판례가 양형요소로 '추가감염' 여부를 고려함(167건). 이 중 추가감염 없었던 경우(164건), 추가감염이 있었던 경우(3건). 즉 대다수 사례에서 추가감염이 없었음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의 감염 및 밀접접촉 여부' 도 상당수 판례가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음. 피고인이 음성이라는 점을 설사한 경우(137건), 양성이라는 점을 설사한 경우(11건), 피고인이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점을 감경사유로 삼은 경우(4건)
- 피고인의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가중사유로 판단한 경우
 -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경우(58건)
 - 피고인의 직업, 지역 상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11건)
 - 가령 (i) 피고인이 간호사, 의대생, 병원원무과직원 등으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잘 아는 직업군인 경우, (ii)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된 지역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iii)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iv) 피고인이 방역조치를 위반하면서 소란행위를 한 경우
 - 방역조치 위반의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과 혼용해서 실시한 판결들도 있음
- '피고인의 부지', '행정청의 부주의'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한 경우도 있음
 - 자가격리조치 만료 직전에 이탈한 경우(10건). 집합금지조치 위반했으나 영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7건)
 - 이중처벌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동종 사실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2건), 피고인이 방역조치 위반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미한 위반인 경우 등도 감경사유로 적용(2건)
 - 행정청의 부주의를 고려한 경우도 있음(2건), 한 건은 양형에 반영하는데 그쳤지만, 한 건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음. 드물지만 정책당국의 방역조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함(3건).

- 위반하게 된 개인적인 경위를 양형사유에 적시한 경우(87건)
- 이 중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양형사유의 한 유형인 ‘피고인의 곤궁함’, ‘코로나19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 등과 구분됨) 등을 참작한 경우
 - 생계를 위해 일을 한 경우(5건)
 -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외출한 경우
 - 구직을 위해 외출한 경우
 - 부족한 구호물품이나 생필품, 식료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외출한 경우(5건)
 - 피고인에게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
 - 판례는 위반경위로서 경제적 사정이나, 피고인이 곤궁하다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를 보았다는 점 등을 판결문에 명시함. 다만 경제적 사유를 감경요소로 고려했다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
- 그밖에 감경사유로 고려한 ‘개인적 사정’들
 - 병원 방문(8건)
 - 가족의 임종을 지키거나 가족이 위독 (3건)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 확인
 - 태풍 피해 예방
 - 피고인이 입덧을 참지 못함
 -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동료의 약을 가지러 외출
 -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외출
 - 휴대폰충전기가 고장 나 새로운 충전기를 사기 위해 부득이 외출
 - 고령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정신장애, 당뇨, 치매 등)
- ‘확산방지노력’, 즉 마스크착용, 추상적 확산방지 노력 등을 고려
- 반면 가중사유로 적용된 사정들
 - 흡연, 유희, 음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경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 반성이 없는 경우

3.2. 주요 판례 분석

3.2.1. 동일한 사실관계로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기소되었으나 사법부가 자의적 법령 적용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7145 판결
 - 피고인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조치되었으나 샌드위치 패널로 폐쇄된 임시생활시설 하단에 구멍을 파서 시설 밖으로 나가며 격리조치를 위반함
 - 피고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모두 기소되었음. 이와 같은 법령적용은 피고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유사 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례적임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세 개의 법률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1135 판결
 - 피고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자가격리조치 통보 받았으나 2회에 걸쳐 이탈함
 - 피고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금 3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으로 기소함
 - 법원은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적용대상, 제도의 취지, 행정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과 재량여부, 위반시 처벌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벌칙금을 납부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 선고함

3.2.2. 이탈 시간, 거리 등 위반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음에도 평균 이상의 벌금형 혹은 실형을 선고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4. 22. 선고 2021고단155 판결
 - 10분 이탈
 - 벌금 250만 원 선고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4. 22. 선고 2021고단184 판결
 - 격리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로 이동
 - 벌금 250만 원 선고함
-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4040 판결
 - 피고인이 9분 간 격리 장소를 벗어나 20미터 떨어진 화단으로 이동
 - 벌금 300만 원 선고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3. 25. 선고 2021고단103 판결

- 피고인이 단 7분 이탈
- 벌금 400만 원 선고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573 판결
 - 자가격리 마지막 날 9분 이탈
 - 벌금 500만 원 선고함
- 인천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5187 판결
 - 1회 20분, 2회 14분 이탈
 - 벌금 600만 원 선고함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1) : 가족의 임종, 위독한 가족의 병구완, 가족의 약을 전달하기 위한 경우 등

- 창원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77 판결
 - 피고인은 국외에서 일을 하던 도중 부친이 낙상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국외에서 생활하는 등 부친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득이하게 귀국함
 - 피고인은 혼수상태에 빠진 부친을 만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어서 부친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면서 1시간가량 격리조치를 위반함.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스스로 해외귀국자임을 밝힘
 - 이에 법원은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실시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청주지방법원 2020. 2. 23. 선고 2020고단1156 판결
 - 피고인이 입국하여 자가격리 조치 통지받았으나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사를 전하기 위하여 이탈함. 실제로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방문한 지 5일 후 사망함
 - 법원은 이를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평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1268 판결
 - 피고인이 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
 - 벌금 300만 원 선고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8. 2020고단3573 판결
 - 피고인들이 어머니에게 약을 부치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함
 - 법원은 약을 건네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험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2) : 피고인 자신의 지병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자가격리 장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탈한 경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2475 판결
 - 피고인이 감염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갔다가(법원은 이 부분은 격리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과에 들러 진료를 받고 바로 복귀함
 - 이탈 시간이 20분에 불과했고, 법원도 피고인의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했음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청주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1312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 약을 구매하기 위해 외출하였으며 30분간 도보로 이동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1고단119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위해 이탈함
 - 법원은 피고인이 격리 중 감염병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청주지방법원 2020. 11. 17. 2020고단1597 판결
 - 자가격리 기간 중 몸이 아파 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격리장소를 10분 이탈함
 - 피고인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범죄피해 신고, 확인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탈한 경우

- 울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5429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이탈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울산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3628이 적지 않은 금액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후 40분간 지구대에 방문한 뒤 바로 귀가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대조적임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행정청으로부터 구호물품(식료품, 생필품 등)을 적절하게 지원받지 못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20고단6140 판결

- 할머니와 생활하며 지급받은 구호물품이 부족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2920 판결

- 피고인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약국과 마트를 방문하느라 10분간 이탈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1812 판결

- 피고인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함.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였으며 이탈거리, 시간도 길지 않았음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2072 판결

-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함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10시간가량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총 4회 위반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벌금 5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선고함

3.2.3.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이 생계와 직결된 사유 때문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1276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하도록 통지 받았으나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고인에게 출근을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출근함
- 법원은 벌금 200만 원 선고함

○ 광주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고단4831 판결

- 피고인이 태풍 예보를 듣고 물꼬를 보기 위해 약 20분간 자가격리장소에서 400미터 떨어진 경작지에 방문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인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6771 판결

- 피고인은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25분간 이탈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함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476 판결

- 피고인이 구직을 이유로 1회 외출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이종 처벌전력은 불리한 감형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해당 판결은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함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773 판결

- 피고인은 자가격리 중 20분간 직업소개소를 방문하고 10시간가량 철거용역을 수행함
- 법원은 피고인이 생계 문제로 이탈했다고 양형사유에 명시하였으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3.2.4.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행정청의 지원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처벌함

○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05 판결

- 배우자가 확진되어 자가격리 및 치료하도록 통보 받은 피고인이 격리 조치 위반한 경우
-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져 자가격리조치를 이해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109 판결

- 피고인이 분리불안, 정신병적 증상 있는 조증 있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 함.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건 직후 자진해서 피고인의 이탈을 신고한 뒤 피고인을 찾아 집으로 데려옴
-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9. 선고 2020고단987 판결

- 피고인이 국내에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17시간가량 버스터미널, PC방 등을 배회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대구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2003 판결이 일정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격리방안이나 현실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임

3.2.5. 행정법상 기본원칙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실수 등으로 피고인이 오인, 착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나,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21. 선고 2020고단2387 판결

- 피고인이 관할 공무원에게 자가격리 장소 이전(이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 '격리장소 이전에 관한 허락을 받는다면 자가격리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들었고, 이후 이사하려 하였으나 장차 이사하려는 장소에서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가격

리 어플의 실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현 거주지에 계속 머물기로 기존 결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하게 됨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유권해석을 오인하여 자신의 이삿짐을 잠시 서울로 옮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가격리 조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자가격리 장소 이동에 대해 문의한 것도 참작함.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를 선고함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4. 선고 2020고단984 판결이 자가격리조치 통지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 담당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조적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2966 판결

- 피고인이 보건소직원의 잘못된 안내와 지시를 받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게 됨
- 법원은 피고인이 보건소 직원의 부주의한 안내와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수원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고단5096 판결

- 사건 당일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안내' 문자를 받고 격리가 해제되었다고 착각하여 이탈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 10. 7. 선고 2020고단177 판결

- 피고인의 자가격리 조치가 끝나기로 예정된 날 보건소에서 피고인의 격리조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구두로 통보하였으나, 격리통지서는 그 다음날 도착함. 피고인은 원래 자가격리 조치가 끝나기로 예정된 시간이 지난 이후 격리 장소 이탈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1. 20. 선고 2020고단1845 판결

- 피고인에게 입국일부터 '보건소 별도 통지 시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만을 담은 격리 통지서를 교부 함. 피고인은 입국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인천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6773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전화로 통보받고 통지서를 교부 받기 전에는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생계 목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느라 격리조치를 위반함
-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국가, 지자체, 국민이 모두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라고 실시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3.2.6.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음성 판정 통보받고 이탈하여 실질적 위험성이 낮음에도 실형을 선고함

- 광주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3029 판결
 - 피고인들이 귀국하여 격리되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받은 후 다시 격리된 상태에서 결혼식 참석 등을 위해 짧은 시간 이탈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광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4833 판결
 -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탈함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3.2.7.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양형에 대한 판단이 다름

- 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6660 판결
 - 피고인이 1시간가량 운전을 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 이탈 시간이 길지 않다고 평가하며 벌금 150만 원 선고함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4. 13. 선고 2021고단48 판결
 - 피고인이 1시간가량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 선고함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17. 2020고단2198 판결
 -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택배를 보내러 우체국에 갔다가 자가격리조치 위반
 - 위반 시간도 한 시간에 불과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하였다고 실시했음에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함

3.2.8.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피고인의 소극적 부인까지 적극적 방해로 판단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1940, 2020고단3472(병합) 판결
 -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방역조치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기억에만 의존하여 이동 경로를 진술할 당시에는 다중모임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구두로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

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이 구두 통지 당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방역조치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다고 평가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 위치값,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정정한 것을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관 등 보건담당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킨 것'이라고 평가함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이는 같은 기간 선고된 벌금형 중 최고액수임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218 판결

-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동선 관련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 주점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산책로에서 만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됨
- 피고인이 주점을 방문한 날은 역학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시점은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였음. 피고인은 산책로에서 확진자를 마주친 사실에 대해서도 확진자와 우연히 만난 것에 불과하여 역학조사관에게 만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함
-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양형 사유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피고인이 확진 판정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3.3. 법원 판결의 문제점

□ 과도한 선고형과 형사처벌 일변도의 문제 -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또는 형벌 적정성의 원칙, 보충성 원칙 등 형사처벌의 기본원칙에 반함

- 분석 대상 판결 566건 중에서 벌금형이 439건으로 약 78%, 징역형은 126건으로 약 22% 정도임. 그 중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은 135건으로 약 23%임. 무죄는 전체 중 단 1건 밖에 없음
- 선고유예와 무죄를 제외하면 551건으로 97% 이상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음. 사실상 기소된 피고인들의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 벌금의 중간값이 200만원이고, 최다수가 200만원, 그 다음이 300만원으로 일반 형사 사건의 벌금액에 비해서도 과도한 편임. 또한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있어 벌금액의 절대액 자체가 높다 할 수 있음
- 가령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2014년 발표한 '폭력사범 벌금기준엄정화 방안' 보도자료⁴⁰⁾에 따르면, 검찰청은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 일소와 객관적인 구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4. 7. 1.부터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폭력사건 벌금 구형을 대폭 올리게 되었다고 함. 시행 전 '폭력사건의 75%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구형, 선고'되던

40) 대검찰청, 「폭력사범 벌금기준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 보도자료, 2014. 6. 30.

것이 방안 시행 후 ‘피해자가 잘못이 없어 비난동기가 크고 중한 폭행(이유없이 수회 강타 등)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구형을, ‘보통 동기로 보통 정도 폭행’에 100만 원 이상 구형하는 것을 ‘강력한 구형’의 표준사례로 제시함

- 그런데 감염병관련법 위반, 특히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 자신도 음성이고 주변에 추가 감염자가 나타나지도 않은, 즉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선고액의 평균값이 200만 원, 다수 선고액이 200만원~ 300만 원임을 볼 때 검찰측 구형은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중한 폭력사범보다도 구형이 높고 처벌이 강하다는 것은 형벌권 남용 또는 책임에 비해 형사처벌이 가혹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또는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특히 수백 건의 판결 중 무죄 선고가 단 1건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조치처분을 위반한 경우 사실상 모두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수사기관의 기소 의지, 처벌의 당위성에 동의하는 법원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그런데 ‘형벌의 보충성원칙’에 입각할 때 형사처벌은 다른 모든 제재수단을 적용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적용되어야 함. 따라서 행정처분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등 형벌이 아니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재수단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그럼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경우 거의 모든 위반사례가 기계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형벌보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 형사처벌의 기본원칙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행정당국이 정책적, 정치적 이유로 ‘강력한 방역과 제재’를 대사회적 메시지로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죄로서 물어야 할 사안인지, 형사처벌의 일반적 원칙에 입각하여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할 책임은 법원에 있음. 과도한 행정권력의 행사로서 개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분리한 삼권분립의 정신이기도 함
- 결국 감염병 위기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과 사법, 입법이 강력한 제어와 처벌이라는 제재일변도로 치우쳐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그 결과 압도적인 공익이라는 핑계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며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법령 적용 혼란상의 문제

- ‘해외입국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라면 결국 ‘입국 → 격리조치 → 위반’ 등으로 행위양태가 유사함에도, 검역법과 출입국관리법, 감염병예방법 세 개의 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⁴¹⁾, 일부만 적용하거나 분리하여 적용한 경우⁴²⁾ 등 법령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음
- 그런데 법원 또한 이러한 일관하지 못한 법적용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하고 있어, 적용법조의 자의적 기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단7145 판결

4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1135 판결

- 어떤 판례의 경우 검역과 감염은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즉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도 자의적 기소와 처벌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큼
- 또한 대다수 처벌대상자인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3호(감염병 유행시 전파 막기 위해 격리조치) 또는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 위해 격리조치) 두 법조항이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감염병이 유행하는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전파를 막기 위한 목적’과 ‘예방을 위한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구성요건을 가진 조문이 흩어져 있어 법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행위자의 고의와 착오, 위법성 등은 구성요건요소에 따라 구분되거나, 같은 사례는 같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유사한 사례의 경우임에도 적용법조가 달라지거나, 행위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조항을 선택적으로 병행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고의와 책임 등 범죄구성요소들을 엄밀히 판단하지 않는 문제
-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성립하여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고의’는 형사처벌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요소임. 또한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책임조각이 되어야 함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음
- 가령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⁴³⁾, 일당과 같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⁴⁴⁾⁴⁵⁾, 몸이 아파 병원에 간 경우⁴⁶⁾, 격리확인을 위한 휴대폰 충전기를 구매하기 위한 경우, 할머니와 생활하며 지급받은 구호물품이 부족해 생필품을 구입하러 나간 경우⁴⁷⁾⁴⁸⁾, 돌봐줄 사람이 없어 생필품 등을 구매하러 나간 경우⁴⁹⁾,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⁵⁰⁾, 치매환자로서 격리조치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⁵¹⁾ 등
 -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탈한 사례들도 있음. 가령 부친

4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9. 선고 2020고단987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2003 판결이 일정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격리방안이나 현실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탈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과 대조적임

4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773 판결

4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476 판결

46) 청주지방법원 2020. 11. 17. 2020고단159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1고단119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1312 판결 등

47)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20고단6140 판결 (벌금 100만원 선고)

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1812 판결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선고)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2920 판결

5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2475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51) 대구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05 판결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친의 병원에 방문⁵²⁾,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될지 모를 인사를 전하고자 한 경우⁵³⁾,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자 한 경우⁵⁴⁾, 어머니에게 약을 부치기 위한 경우⁵⁵⁾ 등

- 심지어 피고인이 분리불안, 정신병적 증상 있는 조증 있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함에도 처벌함.⁵⁶⁾ 이 경우 대법원은 ‘이탈시간이 20분에 불과하고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들’을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이전에 격리조치를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를 선불리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의 조각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는지 등 기본적인 범죄구성요소들의 인자로서 적용 가능한지 엄밀히 판단하지 않고 있음

○ 그 외에도 많은 판례가 범죄구성요소로 판단해야 할 내용들을 양형판단에서만 다루고 있거나 그마저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임

○ 이상의 여러 감염병관련법 위반 관련 혐의로 피고인이 된 경우 재판 과정에서 범죄구성요소 등 법리적인 쟁점을 엄밀히 다투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나 이를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임

- 다수의 판결에 변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 혼자 힘으로 거대한 공익의 명분 앞에 제대로 된 권리 주장이나, 타당하고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양형의 문제

○ 대부분의 판결문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상황’이라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사태 인식 속에서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판단이유의 서두에 제시하고 있음.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을 이미 불균형적으로 비교형량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라는 것은, 가령 침을 뱉는 등 분명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본인이 스스로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님. 그럼에도 이것이 양형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피고인의 ‘부득이한 사유’들을 양형에 고려한 경우도 있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양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못하고 자의적임

- 특히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도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받음.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출근한 경우⁵⁷⁾,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경우⁵⁸⁾, 구직을 위해 외출하거나⁵⁹⁾, 일당을

52) 창원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2377 판결 (벌금 150만원)

53) 청주지방법원 2020. 2. 23. 선고 2020고단1156 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실제 5일 후 부친 사망)

5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1268 판결 (벌금 300만원 선고)

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8. 2020고단3573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109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1276 판결 (벌금 200만원 선고)

58) 인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6771 판결 (벌금 400만원 선고)

별기위해 용역일에 참여한 경우⁶⁰)에도 역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음

-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 이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수 백만 원이 넘는 벌금은 그 자체로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임.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음
- 경제적 사유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였더라도 감경의 결과가 여전히 높은 벌금인 경우 저소득층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적 사유'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 가령 태풍피해를 막기 위해 경작지에 방문하거나⁶¹), 인적이 없는 곳에서 혼자 이동한 경우⁶²)에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음

○ '추상적 위험 상황'은 평가하기에 따라 개인의 방역조치 미준수에 기인하기 보다는 초기 법령의 미비, 방역당국의 행정의 미숙함 등 사실상 국가의 책임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소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형사처벌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 행정처분의 타당성이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음

○ 현재 해외입국자, 감염병의심자의 경우 대부분 '자가격리조치'가 내려짐. 그러나 이러한 자가격리조치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

- 가령 중증치매환자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대상이 되는 경우 가족들이 이 환자를 24시간 행동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탈행위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이 성실히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탈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처벌을 함. 방역상황에서 모든 돌봄과 처분준수의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하면서도, 단지 이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임

- 이러한 경우 애초 격리조치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되지도 판단할 수도 없게 됨

○ 결국 행정의 조치처분, 특히 격리와 같은 신체의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처분이 '예방을 목적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는 다분히 모호하고 막연한 공익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전 사후에 통제하거나 심각한 침해 상태를 즉각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음

○ 이의신청이나 재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나, 그 판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현재와 같은 방역우선 상황, 공익이 거대해진 상황에서는 그 판단의 결과조차 개인의 민감한 권리구제, 인권구제에 미흡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5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 11. 24. 선고 2020고단476 판결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6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773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1) 광주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20고단4831 판결 (벌금 300만원 선고)

62) 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6660 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IV.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본 사법처리 현황의 문제점

1.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국제인권규범

1.1.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제한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는 일정 정도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그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목적과 비례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유엔 자유권규약⁶³⁾, 사회권규약⁶⁴⁾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규약들은 공통적으로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민주사회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특히 1984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조항의 규제 및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CCPR, 이하 “시라쿠사 원칙”)⁶⁵⁾은 유엔 자유권규약에 따른 해석규범으로써 감염병 상황에서의 인권제한의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시라쿠사 원칙에 따르면 권리의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정당화됨
 - ① 법률에 명시될 것
 - ② 합당한 일반이익 목표(legitimate objective of general interest)를 위해 이루어질 것
 - ③ 민주사회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한일 것
 - ④ 최소한도의 침해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
 - ⑤ 자의적이나 차별적이지 않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할 것
 - ⑥ 기한이 한정되어 있으며 검토 가능할 것.

1.2. 코로나19 관련 비상조치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시라쿠사 원칙에서 제시되는 인권제한의 원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엔 인권기구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2020. 4. 23. 발표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비상적 조치(Emergency measures)는 ① 상황의 급박함에 엄격히 부합하는 정도에만 이루어져야 하고 ② 국제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③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④ 차별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화한다고 이야기했음⁶⁶⁾

63) 유엔 자유권규약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64) 유엔 사회권규약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65)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 Doc. E/CN.4/1985/4 (Sep. 28, 1984)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러 인권이슈를 다룬 지침 (Covid-19 Guidance)⁶⁷⁾ 중 비상적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

- 국제법은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평가된 위험과 필요성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기간이 정해져야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정부는 비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게 어떠한 경우에 얼마나 그 영향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이러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 가능한 정부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장해야 하고 무제한적으로 일상의 삶을 규율하지 말아야 한다.

○ 유엔 독립전문가와 특별보고관 등이 2020. 3. 16. 발표한 성명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비례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코로나19 발생에 기초한 비상 선언은 특정 그룹, 소수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음⁶⁸⁾

□ 유엔 인권기구 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률에 의거하고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비례적이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⁶⁹⁾.

□ 유럽평의회⁷⁰⁾와 그 산하기구인 베니스위원회⁷¹⁾, 미주인권위원회⁷²⁾와 같은 지역 기구들 역시 동일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상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한시적인 조치여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1.3. 코로나19 관련 형사적 제제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위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인권 제한 조치들에 관한 원칙, 즉 법률에 근거하고 비례적이며 한시적 조치여야 하고 또한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방역 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다른 어떠한 제제보다도 그 법익 침해가 크다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하기에 격리 등 비상조치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경우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특히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66) UN Secretary General, COVID-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pr. 23. 2020)
 67) UN OHCHR, COVID-19 Guidance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2021. 7. 20. 접속)
 68) COVID-19: States should not abuse emergency measures to suppress human rights - UN experts.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2&LangID=E> (2021. 7. 20. 접속)
 69) WHO. 「Addressing human rights as key to the COVID-19: response」, (Apr. 21. 2020).
 70) Council of Europe, Respecting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n the framework of the COVID-19 sanitary crisis A toolkit for member states, SG/Inf(2020)11 (Apr. 7. 2020)
 71) Venice Commission, CDL-PI(2020)003-e, Compilation of Venice Commission Opinions and Reports on States of Emergency (Apr. 16. 2020)
 72) IACHR, Pandemic and Human Rights in the Americas, Resolution No. 1/2020 (Apr. 10. 2020)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형사처벌은 신중히 고려되어야만 함

□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기구들은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 4. 27. <비상대책과 코로나19 지침 (Emergency Measures and COVID-19 Guidance)>을 발표함

- 해당 지침은 “국가는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할 때 비례의 원칙을 존중하며 예외적인 조치를 인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자의적 또는 차별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COVID-19 비상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함⁷³⁾

- 또한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 벌금을 정해야 하며, 이러한 벌금액을 정할 때는 성별에 따른 영향이나 긴급조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을 상실한 사람들의 상황들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함⁷⁴⁾

○ 나아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차별적으로 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함. 2020. 4. 15. 발표한 <COVID-19와 여성 인권: 정책 지침>에서는 “폭력을 신고하거나 피하려고 봉쇄 조치를 어길 때는 처벌에서 면제돼야 한다”⁷⁵⁾고 강조했고, 2020. 4. 27. 발표한 <COVID-19 지침>에서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봉쇄조치가 시행되든지, 그 어느 누구도 혐의이거나 적절하지 않는 주거에 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⁷⁶⁾고 이야기함

○ 이와 같이 유엔최고대표사무소는 형사처벌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특히 비상조치를 불가피하게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UN expert on the rights to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20. 4. 14. 인권보장을 위한 10가지 핵심원칙을 발표했음⁷⁷⁾

- 그 중 첫 번째 원칙으로 특별보고관은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이 채택될 경우 권리에 대한 제한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73) 국가인권위원회,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 58쪽

74) 위의 책, 59쪽

75) 위의 책, 101쪽

76) 위의 책, 83쪽

77) States responses to Covid 19 threat should not halt freedoms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UN expert on the rights to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r. Clément Voule.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8&LangID=E> (2021. 7. 20. 접속)

-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제시함

- 형사처벌이 부과되기 전에 대중이 이를 숙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이나 규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적용되는 어떤 처벌도 불균형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감염의 추가 확산에 기여하지 않으며, 사법 제도의 기능 저하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포함한, 순간의 우발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엔에이즈(UNAIDS)

- HIV/AIDS는 대표적으로 범죄화된 감염병이며 이러한 범죄화가 인권 및 방역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그렇기에 HIV/AIDS와 관련된 인권기구들은 초기부터 코로나19의 범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음
- 특히 유엔의 HIV/AIDS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는 2020. 3. 20. 발행한 <Rights in the time of COVID-19 : Lessons from HIV for an effective, community-led response>에서 “범죄화는 답이 아니며 장점보다는 해악이 크다”고 분명하게 선언함⁷⁸⁾.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에이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

“형법을 이용하여 행위를 규율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를 늦추기 위한 심각하고 급격한 조치이다. HIV 에피데믹에서 알 수 있듯, 형법을 남용하는 것은 종종 개인 및 전반적인 대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개인들의 삶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이는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을 낙인화하고, 검사를 받는 동기를 감소시키며, 정부와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파괴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형법을 사용하는 것은 종종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나아가 형법 또는 처벌적 처우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보다 취약한 계층인 경우가 많다...바이러스 전파를 늦추도록 하기 위해 형법을 사용하지 말라. 사람들과 커뮤니티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 독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보인다.”

□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 국제형사경찰기구, 이른바 인터폴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법집행기관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음⁷⁹⁾
- 해당 지침은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으나 공중 보건 명령(public order)의 집행에 있어, 국내법과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유럽평의회(COE)

- 유럽평의회는 2020. 4. 7. 발간한 <회원국들을 위한 툴킷>⁸⁰⁾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

78) UNAIDS, 「Rights in the time of COVID-19 — Lessons from HIV for an effective, community-led response」, 2020. 3. 20. <https://www.unaids.org/en/resources/documents/2020/human-rights-and-covid-19> (2021. 7. 27. 접속)

79) Interpol, Guidelines for Law Enforcement, 2nd edition (Nov. 2020)

“3.3. 사생활의 권리, 양심, 표현, 결사의 자유

협약 제8, 9, 10, 11조에 의해 보장되는 이들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향유하는 것은 현대 민주사회의 기준점이다. 이들에 대한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 규정되고 건강 보호를 포함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배, 모임, 결혼, 장례 등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 대한 상당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이들 권리에 대한 논쟁을 야기한다... 위기의 시간에는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더 큰 제한이 정당화되긴 하나, 가혹한 형사적 제재는 우려할만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이 형사적 수단의 과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강제와 예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협약의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어도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1.4. 국제인권규범에서 도출되는 원칙

- 이상과 같은 국제인권법과 여러 국제 및 지역기구들의 문서에 비추어 봤을 때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함
 - 첫째, 형사처벌은 국제인권규범상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고문 및 가혹한 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며, 처벌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경우 평등권 역시 침해함. 그렇기에 형사처벌은 어디까지나 다른 제재수단이 없을 때의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유엔에이즈가 지적하듯 범죄화는 오히려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방역에 해가 될 수 있음. 그렇기에 형사처벌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려는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한 방역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 나아가 이 경우에도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
 - 셋째,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그 처벌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가령 홈리스, 빈곤층,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인 혐오나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넷째, 처벌의 강도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조치를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자유형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벌금형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함. 또한 양형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 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

2. 해외의 사례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거리두기, 자가격리, 역학조사 협조 등의 공중보건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일정한 처벌을 하는 국가들도 있음. 그러나 그 벌칙의 내용과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에 비해 완화된 조치들을 취하는 곳도 있음
 - 영국의 경우 2021. 7. 19.자로 코로나 관련 규제를 해제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The Health

80) Council of Europe, Respecting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n the framework of the COVID-19 sanitary crisis A toolkit for member states, SG/Inf(2020)11 (Apr. 7. 2020)

Protection (Coronavirus, Restrictions) (Steps) (England) Regulations 2021」에 따라 집합금지, 의무격리 및 검사 등 공중보건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였음.⁸¹⁾⁸²⁾ 다만 그 벌칙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액은 400 파운드(약 64만원) 내지 200 파운드(약 34만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음. 또한 경범죄로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지도 않음

○ 일본의 경우 2021. 2. 3.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⁸³⁾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⁸⁴⁾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원거부 등 공중보건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었음. 그러나 이러한 벌칙들은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서, 입원거부 시 50만엔(약 520만원), 역학조사 거부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30만엔(약 314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됨

○ 한편 독일에서는 집합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음. 2021. 11. 1. 독일 바이마르법원은 시위, 행진, 다른 가구원 1명 이상이 초대된 가족모임, 예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유로의 벌금을 규정하는 튀링겐주의 규정이 독일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감염을 막기 위한 일반 접촉 금지는 국가가 모든 시민을 제3자에 대한 건강상 위험인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는 곧 각 개인이 근본적 자유에 속하는 얼마만큼의 위험에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⁸⁵⁾

□ 위와 같은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의 사례들은 각 국가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과 바로 직접적인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음. 하지만 그럼에도 보다 경미한 처벌 내지 행정적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에 있어 강력한 형벌만이 정당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이렇게 처벌을 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 외에 감염병의심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심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자가격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3.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본 사법처리 현황의 문제점

□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규범상의 원칙들과 해외의 사례 등에 비추어 검토해보았을 때 현재의 코로나 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관련 규정들은 국제인권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음

81) 「The Health Protection (Coronavirus, Restrictions) (Steps) (England) Regulations 2021」,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1/364/contents/made> (2021. 7. 26. 접속)

82) 한편 2021. 7. 19. 이후에도 방문국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격리의무 등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Liberty, 「CORONAVIRUS: CRIMINAL PENALTIES」, https://www.libertyhumanrights.org.uk/advice_information/coronavirus-criminal-penalties/ (2021. 7. 26. 접속)

83) 新型コロナウイルス等対策特別措置法 (平成二十四年法律第三十一号)

84)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平成十年法律第一百四号)

85) Amtsgericht Weimar, Urteil vom 11.01.2021, Az. 6 OWi - 523 Js 202518/20

-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방역조치 위반은 모두 형벌로 규율을 하고 있음. 그러나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에 앞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시도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요구하는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또한 형사처벌과 같이 강력한 규제는 이를 통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이러한 형벌과 방역과의 상관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가 위반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남⁸⁶⁾
- 나아가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우려한 사회적 소수자가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 등이 확인됨. 가령 지급받은 구호물품이 부족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람, 성정체성에 대한 아우팅 우려로 역학조사 시 소극적 진술을 한 사람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사례가 확인됨. 이러한 사례는 형사적 제제가 차별적이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됨
- 결론적으로 현재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들과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법처리 현황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인권제한의 원칙과 형사처벌의 한계를 규정한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위반됨. 따라서 국제인권규범의 원칙들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각 개인들이 처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의무가 부과될 수는 있음
- 그러나 아무리 감염병 상황에서의 방역조치라 할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됨
- 특히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함
- 그럼에도 앞서와 같이 사법처리 현황 및 그 근거 법령 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됨

86) 동아사이언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강화’ 불필요한 규제였다” 국내 연구팀 효과 분석」, 2020. 12. 1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336> (2021. 7. 20.접속)

1.1. 감염병예방방법 등 사법처리 근거 법제 및 입법 동향의 문제

-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의 주요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방법과 검역법은 2020. 3. 4. 소위 ‘코로나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래 계속해서 권한행사의 주체, 제제 대상, 제제 수준이 확대되거나 강화되고 있음
- 특히 감염병예방방법은 ‘감염병의심자’를, 검역법은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여 감염병에 확진된 사람만이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음
- 또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가령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방해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사실의 은폐는 그 책임에 있어 명백히 구분이 되지만, 감염병예방방법 하에서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이 됨
- 또한 형벌의 수준에 있어서도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이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벌금액수가 계속 높아지는 등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무엇보다 감염병예방방법은 방역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강제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1.2. 수사 및 사법기관의 문제

- 이와 같이 엄벌주의에 기초한 법제 개정과 더해 수사기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기초를 내세우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의 조치들을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참작해야 할 방역조치 위반행위자까지 수사 및 기소를 받고 있음. 다른 범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구공판, 기소 비율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에 의한 것임
- 한편 이렇게 수사 및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법원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음. 자가격리 이탈 시간이 극히 짧고 이로 인한 추가전파가 없는 등 경미한 위반이거나 생필품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음. 또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따라 다른 양형판단이 이루어지는 등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나아가 많은 이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고 있음

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 정부는 이른바 무관용원칙을 내세우며 방역조치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구상권 청구 등 개인에게 최대한의 책임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서 엄벌주의가 정말로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이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 역시 감염병예방법 등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역학조사 강제, 전면적인 집회 및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이것이 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고 있음
- 한편으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잘못하여 자가격리자가 오해한 경우나,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아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자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도 있음. 이는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임에도 지금과 같은 엄벌주의 기조 하에서는 자가격리자 개인이 오롯이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1.4. 소결

-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에게 오롯이 방역조치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정책은 결국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낙인을 불러옴.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듦으로써 사회 전반의 감염병 대처 역량을 약화시킬 뿐임
- 또한 차별받는 소수자이기에, 또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여 있기에 방역조치를 충분히 준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엄벌주의 하에서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평등과 반차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
-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설문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처벌(24.4%)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78.1%)과 우리 사회를 위한 공동체 의식(65.2%)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처럼, 시민들은 이미 서로를 향한 연대와 존중을 통해서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⁸⁷⁾. 이제는 정부와 국회, 수사 및 사법기관이 이러한 연대와 존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나가야 할 때임

2. 제언

2.1. 국회에 대한 제언

- 국회는 개인에 대한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87) 질병관리청, 「대부분의 국민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 5. 5.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5562&contSeq=365562&board_id=140&gubun=BDJ (2021. 7. 26. 접속)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자 시민들의 기본권을 증대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방식의 개정안 발의를 지양해야 함

- 국회는 감염 또는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화와 혐오를 야기하는 전파매개행위 처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거짓사실의 유포 등을 처벌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처벌을 도입하는 개정안의 발의를 중단해야 함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비판적 검토 없이 강화되어 버린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처벌규정은 과잉형벌과 감염 또는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과 혐오, 취약계층의 증대한 기본권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반복될 감염병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구성요건, 형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 후술하듯이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형사처벌조항이 과잉형벌의 우려가 있는 이상 가중 처벌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감염의 전파여부를 가중처벌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가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같은 법 제79조의3 제3호 등을 통해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안,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방역 및 예방조치의 대상을 감염병의심자가 아닌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 현행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격리의 위반, 집합금지의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증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그 위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행정벌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감염 전파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3호를 삭제하고, 낮은 수준의 행정벌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과잉형벌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 소극적인 진술 등 처벌되지 않아야 할 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형량이 완화되고 처벌대상 행위가 축소될 필요가 있음
 -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 또는 자료제출, 소극적 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2호 및 제3호의 삭제 또는 개정,
 - 단순한 역학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량을 완화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⁸⁸⁾

-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제1항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제49조의2 제1항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와 보호조치의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
 - 생계유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를 할 수 없거나, 행정청의 고지 미비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사법처리의 전제가 되는 강제처분, 방역·예방 조치의 권한 행사가 일탈·남용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제1항이 각 규정하는 권한 행사의 요건에 비례성, 필요성, 보충성의 원칙을 등을 규정하는 방안,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제1항에 따른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처분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독 절차 및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불가피하게 벌칙 조항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기본권을 제약받고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형벌과 책임의 비례성, 적법절차, 국제인권법상의 비례성 및 필요성의 원칙, 인도주의적 접근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벌칙조항을 개정하여야 함
 - 최소한의 위반행위만 감염병예방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벌칙규정 전반의 개편이 필요함
 -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 조치가 상세한 설명 없거나 구두로 간단히 통지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 조치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를 감염병예방법에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회에 미치는 위험도가 다른 행위에 대하여 같은 형량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함. 가령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과 같이 강제처분, 방역 및 예방조치에 따른 격리 위반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각 격리는 그 대상과 그 대상이 가지는 감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상이하므로 그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88) 가령 단순한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015년 법 개정 이전과 같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이천현, 「실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형사정책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 연구총서』, 2015, 107쪽

2.2. 수사 및 사법기관에 대한 제언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현재의 구속수사 원칙, 법정최고형 구형 등 엄벌주의 기조를 전면 철회하여야 함
- 또한 현재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혐의를 검토해야 함
 - 특히 감염전파의 위험성이 없거나 소극적인 진술 등 위법성이 높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으로 방역조치를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함
- 사법기관 역시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처한 상황, 위반의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을 내려야 함
 - 특히 양형에 있어 위반의 정도, 방역조치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고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또한 방역조치 위반과 관련하여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법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있어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선변호인 제도 안내 등 충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

2.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 원칙, 구상권 청구 등 엄벌주의 기조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인권이 최선이 방역이라는 점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여야 함
- 방역조치 위반을 이유로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이 이로 인한 낙인과 혐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방책 역시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자가격리 통지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충분한 생활지원을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자가격리를 이탈하여 처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있어 헌법에 따른 기본권 준수 의무를 상기하고 자의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KOSIS, 「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처분결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82&conn_path=I2
- 관계부처 합동, 「K- 3T 방역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2020. 6. 11.
- 교육부,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백서, 2021; 서울특별시, 『서울시 코로나19 백서』, 서울특별시 백서, 2020
- 국가인권위원회, 『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 -」, 2021. 4. 2.
- 대검찰청, 「폭력사범 벌금기준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 보도자료, 2014. 6. 30.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방역정책 방해하면 구속수사」, 2020. 6. 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3260>
- 백범석, 「COVID-19와 국제인권법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2020
- 보건복지부,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 20.
- _____,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1. 27.
- _____,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2. 23.
- 오동석, 「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생명」, 『윤리와 정책』, 5(1), 2021
- 이원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33(1), 2021
- 이정민, 「코로나19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법학논총』 44(3), 2020
- 이준서,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및 주요내용」, 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
- _____,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 질병관리청, 「대부분의 국민은 처벌보다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 5. 5.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5562&contSeq=365562&board_id=140&gubun=BDJ
- 주현경, 「코로나19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형사정책』 32(4), 2021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방자치단체용)」 제10판, 2021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코로나19 1년 발생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년 발생보고서(2021.1.19. 기준)」, 『주간건강과질병』 제14권 제9호, 2021

하태인,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91), 20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코로나19 대응백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백서,
2021

2. 국내문헌 - 기사

KBS뉴스, 「‘자가격리 위반’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2020. 4. 1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27519>,

MBC,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등 엄중 처벌”」, 2020. 3. 9.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70055_32633.html

뉴스1,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400명 넘어…檢 “무관용 엄정대응”」, 2020. 9. 1. <https://www.news1.kr/articles/?4044476&7>

동아사이언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강화’ 불필요한 규제였다” 국내 연구팀 효과 분석」, 2020. 12. 1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2336>

매일노동뉴스, 「코로나19 방역 ‘집회금지’ 조치 잇단 논란」, 2020. 7. 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30>

법률신문, 「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구형」, 2020. 4. 7.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761>

서울경제, 「경찰청, “격리조치 위반시 완치 후 구속수사”...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2020. 8 .2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I2J3QO>

연합뉴스,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행 선고…코로나19 첫 판결(종합)」, 2020. 5. 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047151060>

_____, 「“돈 없어서…” 창문 없는 고시원서 지내는 자가격리자」, 2020. 6.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146000065>

연합뉴스TV,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 3. 17.,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317016300038>

지방자치단체뉴스,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2021. 7. 29. <http://www.jj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24>

한국일보, 「코로나19방역관리법 위반 7000여명 사법처리」, 2021. 7. 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1809500005147>

9. 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01/102740090/1>

3. 해외문헌

Liberty, 「CORONAVIRUS: CRIMINAL PENALTIES」, https://www.libertyhumanrights.org.uk/advice_information/coronavirus-criminal-penalties/

Seiler, Naomi K.; Vanecek, Anya; Heyison, Claire; and Horton, Katherine 「The Risks of Criminalizing COVID-19 Exposure: Lessons from HIV」, 『Human Rights Brief』 Vol. 24, Iss. 1, 2020

4. 국제 및 지역기구 문서

Council of Europe, Respecting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n the framework of the COVID-19 sanitary crisis A toolkit for member states, SG/Inf(2020)11 (Apr. 7. 2020)

COVID-19: States should not abuse emergency measures to suppress human rights – UN experts.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22&LangID=E>

IACHR, Pandemic and Human Rights in the Americas, Resolution No. 1/2020 (Apr. 10. 2020)

Interpol, Guidelines for Law Enforcement, 2nd edition (Nov. 2020)

States responses to Covid 19 threat should not halt freedoms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UN expert on the rights to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r. Clément Voule.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8&LangID=E>

UNAIDS, 「Rights in the time of COVID-19 — Lessons from HIV for an effective, community-led response」, 2020. 3. 20. <https://www.unaids.org/en/resources/documents/2020/human-rights-and-covid-19>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 Doc. E/CN.4/1985/4

UN OHCHR, COVID-19 Guidance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

UN Secretary General, COVID-19 and Human Rights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pr. 23. 2020)

Venice Commission, CDL-PI(2020)003-e, Compilation of Venice Commission Opinions and Reports on States of Emergency (Apr. 16. 2020)

WHO, 「Addressing human rights as key to the COVID-19: response」, (Apr. 21. 2020).

_____, 「Novel Coronavirus (2019-nCoV) SITUATION REPORT – 1」, 2020. 1. 20.,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0760/nCoVsitrep21Jan2020-eng.pdf?sequence=3&isAllowed=y>

